

1.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현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⑥(현행과 같음) ⑦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교육내용 中 (개정 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폭염과 온열질환

2.1 폭염이란?

폭염이란 여름철에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더위가 장시간 지속되는 고온 현상을 말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폭염의 기준

폭염 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출처〉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 체감온도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며, 특히 습도가 높을수록 땀의 증발이 어려워 체내 열 방출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습도% \ 기온℃	26	28	30	32	34	36	38	40
50	25.6	27.6	29.5	31.5	33.5	35.4	37.4	39.4
60	26.5	28.4	30.4	32.4	34.5	36.5	38.5	40.5
70	27.2	29.3	31.3	33.3	35.4	37.4	39.5	41.5
80	28.0	30.0	32.1	34.1	36.2	38.3	40.4	42.4
90	28.7	30.8	32.9	34.9	37.0	39.1	41.2	43.3
100	29.4	31.5	33.6	35.7	37.8	39.9	42.0	44.1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

2.2 온열질환 예방수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①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이동식),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②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②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③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①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①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②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산업보건실-246

○ 온열질환의 종류

구분	정의	주요증상	응급조치방법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르고 강한 맥박, 심한 두통 오한, 빈맥*, 저혈압, 어지럼증 빈맥* :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빨라진 상태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한다.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어지럼증(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하거나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한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한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다.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체내 염분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특히 더운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육경련 (종아리, 허벅지, 어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곳에서 휴식한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한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한다. 경련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본 교안에 사용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p>열실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힌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둔다.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한다.
 <p>열부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된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체표에 순환하던 혈액의 수분들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힌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
 <p>열발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개의 붉은 보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안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정보

3. 고열(高熱)작업의 재해예방

여름철 폭염과 같은 환경에서 사업장 내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공학적·관리적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1 고열작업이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 ①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②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③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 ④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 ⑤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⑥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 ⑦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 ⑧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 ⑨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 ⑩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 ⑪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 ⑫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 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본 교안에 사용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3.2 고열작업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이해

고열작업은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신체적 부담을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온열질환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온열질환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열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때 고열작업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일반적인 체감온도와는 달리,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가 사용된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고열환경에서 근로자가 받는 열 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서도 고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 고열작업의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측정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측정 제외	①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② 단시간작업 :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다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측정 방법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값을 산출한다.

○ 습구흑구온도(WBGT)

고열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받는 열 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온 외에도 습도, 복사열, 기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단순한 온도 측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열환경의 복합적인 열 부하를 수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열작업장의 위험 수준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보, 보호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 습구흑구온도(WBGT) 산출 공식

①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WBGT(°C) = (0.7 \times \text{자연습구온도}^*) + (0.2 \times \text{흑구온도}^{**}) + (0.1 \times \text{건구온도}^{***})$$

자연습구온도* : 대기의 습도, 기류, 복사열 등의 영향을 받으며 물이 증발할 때 발생하는 기화냉각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된 온도

흑구온도** : 태양광선이나 복사열 등 복사에너지를 포함한 열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측정된 온도

건구온도*** : 공기의 실제 온도를 의미하며, 습도·복사열·기류 등의 영향은 반영하지 않음

② 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WBGT(°C) = (0.7 \times \text{자연습구온도}) + (0.3 \times \text{흑구온도})$$

$$\text{③ 평균 WBGT}(°C) = \frac{(WBGT_1 \times T_1) + (WBGT_2 \times T_2) + \dots + (WBGT_n \times T_n)}{T_1 + T_2 + \dots + T_n}$$

여기에서, WBGT_n :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C)

T₁ :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시간(분)

3.3 재해예방대책

- ① 작업 시작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 ③ 냉방 및 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④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거리, 복사열 차단 등)를 한다.
- ⑤ 휴게시설(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⑥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⑦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열장갑,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지급한다.
- ⑧ 땀의 증발을 방해하는 밀착되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도록 한다.
- ⑨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 ⑩ 근로자에게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린다.
- ⑪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온음료, 소금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근로자가 수분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⑫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체감온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 ⑬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질환자, 신장 질환자 등),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은 작업 중간마다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⑭ 폭염이 집중되는 시간(13시~16시)에는 옥외 작업을 금지한다.
- ⑮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3.4 고열작업 안전점검표(예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작업 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작업 시작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폭염 취약 근로자(만성질환자, 고령자, 과거 온열질환자 등) 여부를 파악하였는가?			
2. 작업환경 온·습도 관리 -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고 있는가? - 냉방, 통풍, 환기, 복사열 차단 등 온열 저감장치가 적절히 설치되어 작동하는가?			
3.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확보 - 휴게시설(그늘막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 건조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4. 보호구 및 복장 관리 - 방열복, 방열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있는가? - 통풍이 잘 되는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5. 온열질환의 증상, 응급조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였는가?			
6. 시원하고 깨끗한 물, 이온음료, 소금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7. 체감온도, 근로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가?			
8. 온열질환 발생 등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중지 및 휴식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3.5 관련법령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p>	<p>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p>	<p>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p>	<p>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p>	<p>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0조(세척시설 등)</p>	<p>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p>	<p>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 방열장갑과 방열복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일시	년 월 일 : ~ : (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 상 인 원				
	참 석 인 원				
교육제목	여름철 폭염과 고열작업의 재해예방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현황 2. 폭염과 온열질환 폭염이란? / 온열질환 예방수칙 3. 고열작업의 재해예방 고열작업이란? / 고열작업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이해 / 재해예방대책 / 안전점검표 / 관련법령				
교육장소 및 실시자	교육장소	직 명		성 명	

〈 교육 참석자 명단 〉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